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04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주영 · 이기현 · 박균택
박상혁 · 박홍배 · 한정애
박 정 · 이용우 · 이학영
문진석 · 진성준 · 박해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

세 면제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 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 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취 득세를 감면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 허세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p> <p>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p>	<p>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을 위한 감면) ① ----- -----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2028년 12월 31일</u>----- -----.</p> <p>④ ----- ----- -----</p>

<p>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 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 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6년</u> <u>12월 31일</u>까지 경감한다.</p>	<p>----- ----- ----- ----- -----<u>2028년 12월 31</u> <u>일</u>-----.</p>
---	--